

# 종암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4 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6일

## 성 북 구 청 장

### 1. 지급 신청내용

- 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: 종암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
- 나. 지급신청인 : 종암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
대표자 박민자
- 다. 신청금액 : 금316,780,000원
- 라. 신청일 : 2015. 7. 28

### 2. 지급계획

- 가. 지급금액 : 금316,780,000원
- 나. 지급대상 : 종암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
대표자 박민자
- 다. 지급방법 : 신청 대표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
- 라. 공고기간 : 2015. 8. 6 ~ 8. 20
- 마. 지급일자 :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건축과(☎2241-29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